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9월 1일
/임주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임주희 의원)

가. 제정이유

○ 포항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관련법령

○「한의약 육성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○ **본 조례안**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, 포항시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**주요 내용으로는,**

- **안 제1조~제2조**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「한의약 육성법」에 근거함을 명시함.
- **안 제3조**는 한의약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.
- **안 제4조**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규정임.
- **안 제5조**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한의약 육성사업을 명시함.
- **안 제6조**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공공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**종합검토 결과**

-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3조, 제5조 및 제8조에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지역 계획 수립 의무를 정하고 있어, 본 조례안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,

- 시장의 책무,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, 육성사업 등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,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의약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됨.

- 이에 따라,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과 한의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,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의 폭이 확대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조례 제정 이후 실체성 있는 사업 집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